

청주지방법원 2021. 12. 2 선고 2021가단663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C과 피고 사이에 2018. 10. 2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8. 10. 29. 접수 제10566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오상혁

별지